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건설업 중심으로 -

윤조덕<sup>†</sup> · 한충현<sup>\*</sup>

한국노동연구원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2007. 2. 2. 접수 / 2007. 6. 27. 채택)

## A Study to Revitalize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 In Construction Industry -

Jo-Duk YOON<sup>†</sup> · Choong-Hyun HAN<sup>\*</sup>

Senior Fellow in Korea Labor Institute

<sup>\*</sup>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Social Welfare Policy,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Received February 2, 2007 / Accepted June 27, 2007)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t forward revitalization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by using the survey(2006.05)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can be summarized to develop the system as the following:

1) If there are neither labor union nor representative of workers in a company, workers must elect the representative of workers at first and then recommendation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by the representative of workers, 2) It should regulated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bout the tenure of the representative of workers and the process of election, 3) Prohibition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as the employer members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and exclusion of both main office supervisor and subcontract-company supervisor from the appointment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4) Measures to realize the prohibitive regula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on the grounds that the inspector has performed legitimate activities as an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5) Statutory regulation of the educations' hours(primary education & professional education), 6) Specification of the professional education and increase of the frequency, 7) Support of the government(the Ministry of Labor) to revitalize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8) Put in a statutory form the regular hours to carry out the work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in the workplace.

**Key Words** :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representative of workers, work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primary education, professional education

### 1. 서 론

#### 1.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정부(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부 본부 및 각 지방노동청, 그리고 지방노동지청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에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감독과 지도 등의 업무를

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12월 현재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 총 인원은 298명(정원 342명)<sup>1)</sup>이며,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는 1,130,094개소, 적용 근로자 수는 11,059,193명<sup>2)</sup>으로, 1명의 산업안전감독관이 3,792개소의 사업장 내지는 37,111명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사항을 지도·점검해야하므로 행정적 대상에 비해 그 수가 부족하며 그 결과, 중·소규모 사업장은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로 남아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매년 노동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 「산업재해현황분석」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의 50

<sup>†</sup>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yoondjd@kli.re.kr

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각년도 전체 사업장 평균 재해율의 1.5배~2배를 초과<sup>3)</sup>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노동부)의 산업안전 지도·감독에 대한 행정적 역량이 산업재해예방에 극히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와 같은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 중의 하나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시작되어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법적 근거(산안법 제61조의2)를 마련하게 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초기의 목적인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sup>4)</sup>. 따라서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sup>5)</sup>에 이어서, 본 연구는 작업이 옥내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업과는 달리 주로 옥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현황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활동 등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취약점을 분석·정리한 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위촉현황

국회 제종길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3월말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자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814명이다. 이 중 건설업이 20.3%(775명, 본 연구에서의 건설업 분류 기준은 건설사업장 위촉자 762명과 건설업 본사 위촉자 13명을 합한 수입), 제조업 등(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과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포함)이 79.7%(3,039명)이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강

원지역이 22.8%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부산·경남지역(22.1%), 인천·경기지역(21.8%), 제주·광주·전라(17.5%) 순이다.

## 1.3. 기존 연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도입된지 11년이 지났으나 이 제도의 활성화 관련 연구로는 실태조사에 근거한 운영현황 및 개선에 대한 연구<sup>5,9)</sup>,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연구<sup>10,11)</sup>,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 방안 연구<sup>12)</sup> 등으로 관련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윤조덕<sup>6)</sup>의 연구에서는 안산지역 중소기업장 실태조사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여부와 활동을 위한 시간 보장 및 회사지원 등에 관한 설문을 하였으며, 또한 안산·안양·수원지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행하여 교육 및 불이익 사례 등 제도 도입 초기의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하였다. 윤조덕·한충현<sup>7)</sup>의 연구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모든 업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552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하였으며, 윤조덕·한충현<sup>8)</sup>의 연구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행하였고, 그리고 윤조덕·한충현<sup>5)</sup>의 연구에서는 2005년도 실태조사 자료 중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심층분석하였다. 최수일<sup>9)</sup>의 연구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회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박태순<sup>10,11)</sup>의 연구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전국의 지역협의회 현황 및 필요성,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영순<sup>12)</sup>의 연구에서는 관계 법령 및 기존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1.4.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조사에 의거한 현황분석과 취약점 및 활성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옥내 고정사업장인 제조업과는 다른 주로 옥외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 2. 실태조사 분석

### 2.1. 일반현황

본 설문조사는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

**Table 1.** The Status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unit: persons, %)

The Status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2006)		
Construction Industry	Seoul · Gangwon Province	177(22.8)
	Busan · South Gyeongsang Province	171(22.1)
	Daegu · north Gyeongsang Province	47( 6.1)
	Incheon · Gyeonggi Province	169(21.8)
	Jeju Island · Gwangju · Jeolla Province	136(17.5)
	Daejeon · Chungcheong Province	75( 9.7)
the sum of Construction Industry		775(20.3)
the others(manufacturing industry etc)		3,039(79.7)
the sum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3,814(100.0)

자료출처: 국회 제종길 의원실에서 제공, 2006.3.31.

으며, 총 775부를 우편발송한 결과 회수된 설문지 중 분석가능한 설문지는 총 154부였다. 이는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있으나(775명) 이 중 전화확인 및 설문지 우편반송을 통하여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것(퇴사, 해당 공사 완료, 해당 감독관 없음 등의 이유)으로 확인된 101명을 제외한 674명의 22.8%에 해당된다.

1) 개요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건설업 사업장 소속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은 Table 2와 같이 총 154명이다. 이들의 성별은 응답자(154명) 중 남자가 100.0% (154명)이다. 응답자(154명)의 평균 연령은 만 47.43세이며, 이중 50대가 39.5%(60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40대 25.7%(39명), 30대 25.0%(38명) 순이었다. 활동지역은 응답자(154명)의 서울·강원지역이 28.6%(44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제주·광주·전라지역 23.4%(36명), 부산·경남지역 19.5% (30명)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기간은 응답자(154명)의 1년 이상~3년 미만인 46.1%(71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년 미만 27.9%(43명), 3년 이상~6년 미만 18.2%(28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방법과 직책

Table 2. Demography survey (unit: persons, %)

question	answer	frequency(%)
gender (n=154)	male	154(100.0)
	female	.
age (n=152)	20s	3( 2.0)
	30s	38(25.0)
	40s	39(25.7)
	50s	60(39.5)
	60s	12( 7.9)
	average(S.D)	47.44(9.74)
area (n=154)	Seoul · Gangwon Province	44(28.6)
	Busan · South Gyeongsang Province	30(19.5)
	Daegu · north Gyeongsang Province	13( 8.4)
	Incheon · Gyeonggi Province	13( 8.4)
	Jeju Island · Gwangju · Jeolla Province	36(23.4)
	Daejeon · Chungcheong Province	18(11.7)
period (n=154)	under 1 year	43(27.9)
	1 year - under 3 years	71(46.1)
	3 years - under 6 years	28(18.2)
	over 6 years	12( 7.8)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경위는 Table 3과 같이 응답자(152명)의 40.8%(62명)가 노사가 협의해서 추천된 경우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본인의 희망 28.9%(44명), 사업주의 일방적 추천 15.8% (24명) 순으로, 건설현장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 유무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방법의 분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카이제곱값(X<sup>2</sup>) 14.900, 자유도(df) 6, 유의도 p<0.05). 건설현장에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Type I)는 본인희망에 의한 위촉(45.7%), 건설현장에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대표만 있는 경우(Type II)는 노사가 협의해서 위촉(45.7%),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III)는 노사가 협의해서 위촉(56.0%)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사업장 내에서의 직책은 Table 4와 같이 응답자(148명)의 39.9% (59명)가 원청 직영반장으로 가

Table 3.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appointment (unit: persons, %)

	Type I	Type II	Type III	total
by oneself	21 (45.7)	16 (19.8)	7 (28.0)	44 (28.9)
by employer	6 (13.0)	16 (19.8)	2 ( 8.0)	24 (15.8)
by discussion from both sides	11 (23.9)	37 (45.7)	14 (56.0)	62 (40.8)
the others (by one's party etc)	8 (17.4)	12 (14.8)	2 ( 8.0)	22 (14.5)
total	46 (100.0)	81 (100.0)	25 (100.0)	152 (100.0)

주 Type I: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 Type II: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는 있는 경우, Type III: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Table 4.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duty in company (unit: persons, %)

	Type I	Type II	Type III	total
본사 관리자	1( 2.2)	3( 3.8)	1( 4.2)	5( 3.4)
원청 관리자	19(42.2)	20(25.3)	11(45.8)	50(33.8)
원청 직영반장	18(40.0)	34(43.0)	7(29.2)	59(39.9)
하청 관리자	4( 8.9)	5( 6.3)	2( 8.3)	11( 7.4)
하청 직영반장	2( 4.4)	9(11.4)	1( 4.2)	12( 8.1)
현장 일반근로자 -정규직	0	3( 3.8)	1( 4.2)	4( 2.7)
현장 일반근로자 -임시직	0	5( 6.3)	1( 4.2)	6( 4.1)
기타	1( 2.2)	0	0	1( 0.7)
total	45(100.0)	79(100.0)	24(100.0)	148(100.0)

주 Type I: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 Type II: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는 있는 경우, Type III: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원청 관리자 33.8%(50명), 하청 직영반장 8.1%(12명) 순으로, 건설현장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 유무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책의 분포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카이자승값( $X^2$ ) 14.228, 자유도(df) 14, p값 .433).

3) 건설사업장 공사금액별 노동조합 현황

건설사업장 공사금액별 노동조합 현황은 Table 5와 같이 20억 이상~120억 미만인 경우, 응답자(6명)의 100.0%(6명)가 노동조합 '없음'으로 나타났다. 120억 이상~800억 미만인 경우, 응답자(67명) 중 노동조합 있음 11.9%(8명), 노동조합 없음 88.1%(59명)로 나타났다. 800억 이상인 경우, 응답자(71명) 중 노동조합 있음 21.1%(15명), 노동조합 없음 78.9%(56명)로 나타났다.

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4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로서 현재 건설사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일치하거나 가장 가까운 활동에 대해 모두 선택하게 한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토목 20억원-150억원)인 경우는 응답건수(24건)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가 20.8%(5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이 각각 16.7%(4건)로 나타났다.

1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토목 150억원-800억원)인 경우는 응답건수(338건)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와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가 각각 16.0%(54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11.8%(40건)로 나타났다.

Table 5. The construction orders by the labor union (unit: hundred million won, person, %)

		labor union		total
		not exist	exist	
construction orders (n=145)	2 ~ 20	1(100.0)	0	1(100.0)
	20 ~ 120(1)	6(100.0)	0	6(100.0)
	120 ~ 800(2)	59(88.1)	8(11.9)	67(100.0)
	over 800	56(78.9)	15(21.1)	71(100.0)
	계	122(84.1)	23(15.9)	145(100.0)

주 1) 토목의 경우, 20억~150억, 2) 토목의 경우, 150억~800억

Table 6. Tasks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by the construction orders (unit: hundred million won, case, %)

	2~20	20~120	120~800	over 800	total
(1)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1 (11.1)	4 (16.7)	54 (16.0)	66 (15.5)	125 (15.7)
(2)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건설 현장 감독에의 참여	1 (11.1)	3 (12.5)	34 (10.1)	39 (9.2)	77 (9.7)
(3) 건설현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에의 참여	1 (11.1)	2 (8.3)	39 (11.5)	45 (10.6)	87 (10.9)
(4)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에의 입회	1 (11.1)	3 (12.5)	40 (11.8)	49 (11.5)	93 (11.7)
(5)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1 (11.1)	0	22 (6.5)	33 (7.8)	56 (7.0)
(6)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1 (11.1)	4 (16.7)	38 (11.2)	52 (12.2)	95 (11.9)
(7)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1 (11.1)	2 (8.3)	36 (10.7)	43 (10.1)	82 (10.3)
(8)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요청	1 (11.1)	1 (4.2)	21 (6.2)	33 (7.8)	56 (7.0)
(9)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1 (11.1)	5 (20.8)	54 (16.0)	65 (15.3)	125 (15.7)
total	9 (100.0)	24 (100.0)	338 (100.0)	425 (100.0)	796 (100.0)

주 다중응답 응답자 138명, 응답건수 796건

8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응답건수(425건) 중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가 15.5%(66건)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15.3%(65건)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유무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중 취약한 항목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Type I),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4.0%)가 가장 취약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는 있는 경우(Type II), 가장 취약한 항목은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요청'(7.3%)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III), 가장 취약한 항목은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7.4%)로 나타났다.

2.3.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법

**Table 7.** Tasks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by the labor union & the workers' representative (unit: case, %)

	Type I <sup>1)</sup>	Type II <sup>2)</sup>	Type III <sup>3)</sup>
(1)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37 (18.6)	67 (15.3)	20 (13.4)
(2)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건설현장 감독에의 참여	17 ( 8.5)	41 ( 9.3)	18 (12.1)
(3) 건설현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23 (11.6)	49 (11.2)	14 ( 9.4)
(4)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자체 검사에의 입회	24 (12.1)	51 (11.6)	17 (11.4)
(5)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8 ( 4.0)	36 ( 8.2)	11 ( 7.4)
(6)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23 (11.6)	53 (12.1)	18 (12.1)
(7)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20 (10.1)	45 (10.3)	16 (10.7)
(8)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요청	10 ( 5.0)	32 ( 7.3)	13 ( 8.7)
(9)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37 (18.6)	65 (14.8)	22 (14.8)
total	199 (100.0)	439 (100.0)	149 (100.0)

주 1) 다중응답 응답자 43명, 응답건수 199건, 2) 다중응답 응답자 71명, 응답건수 439건, 3) 다중응답 응답자 23명, 응답건수 149건, Type I: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 Type II: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는 있는 경우, Type III: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유무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제점 발견시, 어떤 행동을 하겠냐는 설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측에 계

**Table 8.** Problem solving methods health by the labor union & the workers' representative (unit: person, %)

	Type I	Type II	Type III	total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측에 계속 요구	26 (57.8)	39 (50.6)	12 (52.2)	77 (53.1)
노동부 지방노동지청에 신고	1 ( 2.2)	1 ( 1.3)	1 ( 4.3)	3 ( 2.1)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의기구에 보고	17 (37.8)	36 (46.8)	10 (43.5)	63 (43.4)
사업주단체에 문제제기	1 ( 2.2)	1 ( 1.3)	0	2 ( 1.4)
계	45 (100.0)	77 (100.0)	23 (100.0)	145 (100.0)

주 Type I: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 Type II: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는 있는 경우, Type III: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속 요구’로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모두 없는 경우 (Type I) 응답자(45명)의 57.8%(26명),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Type II) 응답자(77명)의 50.6%(39명),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III) 응답자(23명)의 52.2%(12명)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현장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 유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제점 발견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행동에 대한 분포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카이제곱값( $X^2$ ) 2.159, 자유도(df) 6, p값 .905).

#### 2.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건설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 참여형태

건설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126명)의 85.7%(108명)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 8.7%(11명), 공정안전보건협의체 또는 기타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 3.2%(4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협의기구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음 2.4%(3명)로 나타났다(Table 9 참조).

또한 이들 협의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106명)의 78.3%(83명),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10명)의 70.0%(7명), 그리고 공정안전보건협의체 또는 기타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4명)의 75.0%(3명)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협의기구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해당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각각 33.3%(1명)로 조사되었다.

한편,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유무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위원 참여형태는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모두 없는 경우(Type I)는 응답자(27명)의 59.3%(16명),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 (Type II)는 응답자(64명)의 82.8%(53명),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III)는 응답자(14명)의 92.9%(13명)

**Table 9.**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unit: persons, %)

question	answer	frequency (%)	question	answer	frequency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직영반장급 이상의 관리자 직급을 가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총 104명)의 경우, 근로자측 위원이 80.8%(84명), 사용자측 위원이 19.2%(20명)로 조사되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108 (85.7)	위원 (n=106)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83 (78.3)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sup>1)</sup>	21 (19.8)
				참여하지 못함	2 (1.9)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	11 (8.7)	위원 (n=10)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7 (70.0)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sup>2)</sup>	1 (10.0)
				참여하지 못함	2 (20.0)
	공정안전보건협의체 또는 기타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	4 (3.2)	위원 (n=4)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3 (75.0)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0
				참여하지 못함	1 (25.0)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협의기구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 않음 (n=126)	3 (2.4)	이유 (n=3)	사업주의 반대 또는 무관심	1 (33.3)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무관심	0
				해당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1 (33.3)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150억원 미만)				1 (33.3)	

주 1),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 구성 시, 근로자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직영반장급 이상의 관리자 직급을 가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총 104명)의 경우, 근로자측 위원이 80.8%(84명), 사용자측 위원이 19.2%(20명)로 조사되었음.

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현장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 유무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측 위원 또는 사용자측 위원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한 분포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카이자승값( $X^2$ ) 5.671, 자유도(df) 2,  $p < 0.1$ , 단, 참여하지 못하는 감독관 제외).

## 2.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 1) 기초소양교육 현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후, 기초소양 교육을 받은 감독관은 Table 11과 같이 응답자(153명)의 86.3%(132명)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소양 교육

을 받지 않은 감독관은 응답자의 13.7%(21명)로, 그 이유(응답자 19명)는 회사측 사정과 개인 사정이 각각 31.6%(6명), 기초소양 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 21.1%(4명) 순이었다.

### 2) 기초소양교육의 문제점

기초소양 교육을 받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기초소양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Table 12와 같이 응답자(89명)의 41.6%(37명)가 각각 건설업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된 것과 교육받는 장소로 이동하기 불편(거리가 멀다)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연간 교육시간이 많아서 부담됨 3.4%(3명)로 나타났다.

**Table 10.** Participation to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as worker's committee member or employer's committee member (unit: persons, %)

	Type I	Type II	Type III	total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여	16(59.3)	53(82.8)	13(92.9)	82(78.1)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	9(33.3)	11(17.2)	1(7.1)	21(20.0)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2(7.4)	0	0	2(1.9)
계	27(100.0)	64(100.0)	14(100.0)	105(100.0)

주 Type I: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 Type II: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는 있는 경우, Type III: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Table 11.** The basis training (unit: persons, %)

question	answer	frequency(%)
the basis training (n=153)	Yes	132(86.3)
	No	21(13.7)
question	answer	frequency(%)
Reason for no participation to the basis training (n=19)	company reasons	6(31.6)
	private reasons	6(31.6)
	no information about the basis training	4(21.1)
	the others	3(15.8)
	total	19(100.0)

**Table 12.** Problems in the basis training (unit: persons, %)

question	answer	frequency(%)
Problems in the basis training (n=89)	건설업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으로 교육내용이 구성	37(41.6)
	교육받는 장소로 이동하기 불편(거리가 멀다)	37(41.6)
	연간 교육시간이 많아서 부담됨	3(3.4)
	기타	12(13.5)
	계	89(100.0)

**Table 13.** The advanced training (unit: persons, %)

question	answer	frequency(%)
The advanced training (n=111)	Yes	59(53.2)
	No	52(46.8)
question	answer	frequency(%)
Reason for no participation to the advanced training (n=52)	company reasons	12(23.1)
	private reasons	20(38.5)
	no information about the basis training	16(30.8)
	the others	4( 7.7)
	total	52(100.0)

**Table 14.** Problems in the advanced training (unit: persons, %)

question	answer	frequency(%)
Problems in the advanced training (n=27)	건설업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으로 교육내용이 구성	11(40.7)
	교육받는 장소로 이동하기 불편(거리가 멀다)	13(48.1)
	연간 교육시간이 많아서 부담됨	1( 3.7)
	기타	2( 7.4)
	계	27(100.0)

**3) 전문화교육 현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지 1년 이상인 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 Table 13과 같이 응답자(111명)의 53.2%(59명)가 전문화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화교육을 받지 않은 감독관은 응답자의 46.8% (52명)로, 그 이유는 개인 사정 38.5% (24명), 전문화 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 30.8%(16명), , 회사측 사정 23.1%(12명) 순이었다.

**4) 전문화교육의 문제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지 1년 이상인 감독관에게 전문화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Table 14와 같이 응답자(27명)의 48.1%(13명)가 교육받는 장소로 이동하기 불편(거리가 멀다)하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건설업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으로 교육내용 구성 40.7%(11명), 기타 7.4% (2명)로 나타났다.

**2.6.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방해요인과 활성화 방안**

**1) 방해요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유무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방해요인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Table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모두 없는 경우(Type I)는 전체 응답건수 (87건)의 28.7%(25건)가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Type II)는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이 각각 전체 응답건수(153건)의 24.8%(38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III)는 전체 응답건수(44건)의 29.5%(13건)가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으로 나타났다.

**Table 15.** Preclusion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unit: responses, %)

	Type I	Type II	Type III	total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	25 (28.7)	38 (24.8)	13 (29.5)	76 (26.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감 부족	22 (25.3)	38 (24.8)	10 (22.7)	70 (24.6)
건설현장 관리자의 비협조	8 ( 9.2)	14 ( 9.2)	5 (11.4)	27 ( 9.5)
사업주의 인식 부족	14 (16.1)	22 (14.4)	8 (18.2)	44 (15.5)
해고(또는 계약해지)나 인사고과 등에서 신분상의 불이익	3 ( 3.4)	10 ( 6.5)	0	13 ( 4.6)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미흡	15 (17.2)	31 (20.3)	8 (18.2)	54 (19.0)
계	87 (100.0)	153 (100.0)	44 (100.0)	284 (100.0)

주 다중응답 응답자 145명, 응답건수 284건

**Table 16.** Activation method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unit: responses, %)

	Type I	Type II	Type III	total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주 주도의 건설현장 안전 교육	9 (10.0)	16 (10.3)	7 (15.9)	32 (11.1)
노동조합의 안전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4 ( 4.4)	12 ( 7.7)	2 ( 4.5)	18 ( 6.2)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와의 연계 강화	13 (14.4)	25 (16.1)	4 ( 9.1)	42 (14.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	17 (18.9)	24 (15.5)	10 (22.7)	51 (17.6)
유관 기관인 노동부 지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의 연계 강화	6 ( 6.7)	15 ( 9.7)	2 ( 4.5)	23 ( 8.0)
건설현장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17 (18.9)	28 (18.1)	10 (22.7)	55 (19.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	24 (26.7)	35 (22.6)	9 (20.5)	68 (23.5)
계	90 (100.0)	155 (100.0)	44 (100.0)	289 (100.0)

주 다중응답 응답자 147명, 응답건수 289건

**2) 활성화 방안**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유무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활성화 방안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Table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모두 없는 경우(Type I)는 전체 응답건수(90건)의 26.7%(24건)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가 있는 경우(Type II)는 전체 응답건수(155건)의 22.6%(35건)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 보장’,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III)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와 ‘건설현장에 적합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이 각각 전체 응답건수(44건)의 22.7% (10건)로 나타났다.

**3. 논의**

**3.1. 위촉경위**

사업장 내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조사에 의하면 건설현장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 유무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방법의 분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특히,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46명), 단지 본인 희망에 의한 위촉이 45.7% (21명)로, 이는 노동부 지방지청에서 담당근로감독관이 당해 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추천하고 노동부장관이 위촉한 경우로 판단되며, 13.0%(6명)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추천하여 위촉된 경우, 그리고 17.4%(8명)는 기타의 방법(조직에서 추천 등)으로 추천하여 위촉된 경우로 이들 3가지 방법 모두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장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난 후, 선출된 근로자대표에 의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거쳐 위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2. 근로자대표 선출의무, 선출방법, 임기**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근로자대표의 선출의무 및 선출방법, 그리고 임기에 관한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법 규정 상의 미비로 인하여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고 있다(Table 3 참조). 또한 근로자대표를 전체 근로자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할 것인지 또는 부서별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할 것인지, 그리고 임기는 몇 년으로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고 있는 잘못된 제도 운영은 이와 같은 법령 상의 미비점이 보완되어야함을 시사한다.

**3.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 내에서의 직책별 산업안전보건 관련 심의 · 의결 기구 참여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사관리자, 원청 관리자 및 원청 직영반장이 응답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전체(148명)의 77.0%(114명)를 차지하고 있어(Table 4 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45명), 현장 일반직 근로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경우는 없으며 본사관리자, 원청관리자 및 원청 직영반장이 위촉된 경우는 88.4%(38명)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 · 운영되고 있는 경우(I: 102명), 본사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3명)의 66.7%(2명), 원청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36명)의 27.8%(10명), 하청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7명)의 28.6%(2명)가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3.4.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 유무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의 취약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들 중 가장 취약한 업무는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Type I)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Type III),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가 각각 4.0%, 7.4%로, 그리고 노동조합은 없지만 근로자대표는 있는 경우(Type II),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



시요청'이 7.3%로 나타나(Table 7 참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임시 건강진단 실시요청 및 감독 기관에의 신고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 유무 또는 근로자대표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해 감독기관에의 신고 또는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꺼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노동부 지방노동지청에 신고를 극도로 꺼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8 참조). 이는 Table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자급(본사관리자, 원청관리자, 하청관리자)일수록 사업주의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 또는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 중 가장 낮은 비중(각각 9.4%, 6.5%, 6.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 3.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시간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써 기초소양교육을 받기

**Table 17.** Participation to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unit: persons, %)

구분	1)	2)	3)	4)	5)	6)	7)	8)	계	
I	A	1 (33.3)	24 (66.7)	35 (94.6)	5 (71.4)	7 (87.5)	4 (100.0)	5 (83.3)	0	81 (79.4)
	B	2 (66.7)	10 (27.8)	2 (5.4)	2 (28.6)	1 (12.5)	0	1 (16.7)	1 (100.0)	19 (18.6)
	C	0	2 (5.6)	0	0	0	0	0	0	2 (2.0)
	계	3 (100.0)	36 (100.0)	37 (100.0)	7 (100.0)	8 (100.0)	4 (100.0)	6 (100.0)	1 (100.0)	102 (100.0)
II	A	1 (100.0)	1 (100.0)	2 (40.0)	.	3 (100.0)	.	.	.	7 (70.0)
	B	0	0	1 (20.0)	.	0	.	.	.	1 (10.0)
	C	0	0	2 (40.0)	.	0	.	.	.	2 (20.0)
	계	1 (100.0)	1 (100.0)	5 (100.0)	.	3 (100.0)	.	.	.	10 (100.0)
III	A	.	1 (100.0)	2 (66.7)	.	.	.	.	.	3 (75.5)
	B	.	0	1 (33.3)	.	.	.	.	.	1 (25.5)
	C	.	0	.	.	.	.	.	.	0
	계	.	1 (100.0)	3 (100.0)	.	.	.	.	.	4 (100.0)

주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II: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 III: 공정안전보건 협의체 또는 기타 협의체로 대체 설치되어 운영, A: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B: 사용자위원으로 참여, C: 참여하지 못함, 1) 본사관리자, 2) 원청관리자, 3) 원청직영반장, 4) 하청관리자, 5) 하청직영반장, 6) 현장근로자-정규직, 7) 현장근로자-임시직, 8) 기타

**Table 18.** Tasks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by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s duty in company (unit: responses, %)

	본사 관리자	원청 관리자	원청직 영반장	하청 관리자	하청직 영반장
(1)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4 (12.5)	43 (15.5)	54 (15.7)	10 (15.2)	9 (14.1)
(2)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건설현장 감독에의 참여	3 (9.4)	28 (10.1)	31 (9.0)	7 (10.6)	7 (10.9)
(3) 건설현장 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에의 참여	4 (12.5)	29 (10.5)	40 (11.6)	7 (10.6)	6 (9.4)
(4)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자체 검사에의 입회	4 (12.5)	30 (10.8)	44 (12.8)	7 (10.6)	8 (12.5)
(5)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3 (9.4)	18 (6.5)	28 (8.1)	4 (6.1)	4 (6.3)
(6)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3 (9.4)	34 (12.3)	43 (12.5)	6 (9.1)	7 (10.9)
(7)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3 (9.4)	32 (11.6)	28 (8.1)	9 (13.6)	8 (12.5)
(8)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요청	3 (9.4)	21 (7.6)	24 (7.0)	6 (9.1)	4 (6.3)
(9)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5 (15.6)	42 (15.2)	53 (15.4)	10 (15.2)	11 (17.2)
total	32 (100.0)	277 (100.0)	345 (100.0)	66 (100.0)	64 (100.0)

	현장근로자-정규직	현장근로자-임시직	기타	total
(1)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자체 점검에의 참여	2 (22.2)	5 (17.2)	1 (16.7)	128 (15.5)
(2)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건설현장 감독에의 참여	0	2 (6.9)	0	78 (9.4)
(3) 건설현장 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에의 참여	1 (11.1)	4 (13.8)	1 (16.7)	92 (11.1)
(4) 건설현장에서 행하는 기계·기구자체 검사에의 입회	2 (22.2)	2 (6.9)	1 (16.7)	98 (11.8)
(5)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0	2 (6.9)	0	59 (7.1)
(6)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1 (11.1)	3 (10.3)	1 (16.7)	98 (11.8)
(7)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1 (11.1)	3 (10.3)	1 (16.7)	85 (10.3)
(8)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실시요청	0	3 (10.3)	0	61 (7.4)
(9)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2 (22.2)	5 (17.2)	1 (16.7)	129 (15.6)
total	9 (100.0)	29 (100.0)	6 (100.0)	828 (100.0)

주 다중응답 응답자 142명, 응답건수 828건

않는 경우가 13.7%, 그리고 전문화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46.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Table 13 참조). 이들이 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회사측 사정내지는 개인사정이 61~63%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도의 경우,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전문화교육은 총 2회(신규 1회, 보수 1회)로 각각 16명과 12명의 총 28명(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총원 775명, Table 1 참조)이 참여하였다<sup>13)</sup>. 이는 전문화 교육 개최 횟수의 증가 필요성과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교육참여 보장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3.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내용

기초소양교육에서의 문제점은 ‘건설업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이 41.6%를 차지하고 있다(Table 12 참조).

2006년도 기초소양교육(서울지역본부의 경우,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2명<sup>14)</sup> 참석)은 6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과목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과 임무 및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 산업보건기초, 산업안전일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사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사례의 5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sup>14)</sup>. 그러나 건설업 관련 과목은 없으며, 따라서 기초소양교육에서도 건설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전문화교육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건설업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과목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이 40.7%를 차지하고 있다(Table 14 참조).

2006년도 전문화교육(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전국적으로 신규 16명, 보수 12명 참석, 총 인원 28명<sup>15)</sup>)은 2박3일의 17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규과정의 과목은 산업안전보건 법규해설, 추락 및 낙하방지, 자체점검 요령, 건설안전 체험교육, 직업병 예방, 재해발생시 응급처치, 산재보상 실무, 명예감독관 업무 성공사례 발표 및 토의의 8개 과목으로, 그리고 보수과정의 과목은 산업안전보건 법규해설, 전기재해 예방, 사고사례 및 토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토의, 근로자 건강진단, 재해발생시 응급처치, 산재보상 실무, 명예감독관 업무 성공사례 발표 및 토의의 8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sup>15)</sup>. 그러나 각 과목당 2시간씩 배정되어 개별과목당 시간이 부족하며, 건설업의 전문적인 교육과목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과목의 세분화 및 여러 차례의 보수과정 개설·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3.7. 방해요인과 활성화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방해요인으로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을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Table 15 참조). 이와 같은 지적은 윤조덕·한충현<sup>5)</sup>의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조사 분석에서도 제기한 바가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활성화 방안으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보장’으로 나타났다(Table 16 참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제2항에 불이익처우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조항만으로는 미흡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내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의 명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3.8.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 방안

윤조덕·한충현<sup>5)</sup>의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조사에 의하면, 활성화 방안(다중응답 423건)으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제고가 34.5%로 가장 많이 제기되었고, 다음은 유관기관(노동부지방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의 연계강화(22.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장 내 안전관련 교육강화(1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 방안(다중응답 289건)으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및 신분보장이 2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개선(19.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제고(1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 보장이 미약하고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건설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4. 결론 및 정책제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도입·시행된지 11년이 경과하는 동안 수차에 걸친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토론회 및 정책 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실태조사에 의한 문제점 및 취약점 분석에 근거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사업장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가 모두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업장내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난 후, 선출된 근로자대표에 의해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추천과 이후 위촉,
- 2)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대해 산업 안전보건법령에 규정,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용자위원으로의 활동금지과 더불어 이를 위하여 본사 관리자 및 원청관리자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배제,
-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의 가장 큰 취약점(법령위반 사실에 대한 감독기관에의 신고)해소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불이익처우 금지 규정의 현실화 방안 강구,
-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기초소양교육 및 전문화 교육 시간보장의 법적 명문화,
- 6) 전문화교육의 교육과목 세분화 및 횟수 증대,
-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노동부)의 적극적 제도 운영 및 충분한 지원,
-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사업장내에서의 활동시간 보장의 법적 명문화.

### 참고문헌

- 1) 노동부(산업안전국 안전보건정책팀),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현황(내부자료), 2007.1.
- 2)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2005」, p. 18, 2006.
- 3)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2005」, pp. 32~33, 2006.
- 4) 노동부, 「제2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2005-2009)」, p. 69, 2005.
- 5) 윤조덕, 한충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방안 연구-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안전학회지, 제21권, 제5호, pp. 92~102, 2006.
- 6) 윤조덕, “산업안전과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안산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IMF 하에서의 산업안전과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자료집)」,

주최: 한국노동연구원/UNDP(유엔개발계획), pp. 1~74, 1998.6.17.

- 7) 윤조덕, 한충현, “노사참여적 예방활동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역할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주최: 국회의원 김영주·제종길, 주관: 명예감독관지역협의회(안산, 안양, 광주, 대전, 청주, 포항), pp. 1~78, 2005.6.30.
- 8) 윤조덕, 한충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방향-제조업, 건설업,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주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국회의원 제종길, pp. 1~129, 2006.7.7.
- 9) 최수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개선과 노동운동의 정책과제”, 「노동조합 주도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개선정책 토론회(자료집)」, 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p. 3~38, 2002.
- 10) 박태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자료집)」, 주최: 한국노동연구원, pp. 1~22, 1998.
- 11) 박태순, “제도 도입 10년을 맞이한 지역협의회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자료집)」, 주최: 국회의원 김영주·제종길, 주관: 명예감독관지역협의회(안산, 안양, 광주, 대전, 청주, 포항), pp. 1~78, 2005.
- 12) 이영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 방안”, 「노동조합 주도의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정책 토론회(자료집)」, 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pp. 39~52, 2002.
- 13)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교육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전문화교육 현황, 2007.1.
- 14) 한국산업안전공단(서울지역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006년도 기초소양교육 현황(내부자료), 2007.1.
- 15)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교육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전문화교육 현황(내부자료), 2007.1.